

프랑스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황준욱 (소수연구원 대표)

■ 프랑스의 프리랜서 건축가 로랑

로랑(가명)은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며, 한국 출신 부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파리 근교(파리 중심부까지 기차로 1시간 정도)의 자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중산층에 속하는 건축가이다.¹⁾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사항인 건축가협회 등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역시 의무사항인 의료보험은 RSI에, 노령/퇴직연금은 CIPAV에 가입하였다.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시 건축가(건축사 면허 소지)인 부인과 같이 거주지 인근에 건축사 사무소를 내고 활동하고 있다.

건축학교를 졸업한 후 2001년 건축가협회에 등록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3년 동안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계약을 했고, 돈을 받은 것은 계약 후 2년 뒤라고 말한다.

로랑은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작업을 하는데, 기초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 과정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계약 내용과 작업 내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고 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 예정인 이승렬 외(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1) 2013년 3월 이루어진 프랑스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면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명한다.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건축가협회, 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는다고 한다. 근로시간은 고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프리랜서의 장점 중 가장 큰 것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덕분에 가족과의 생활이 특히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이고 가족친화적인 근로는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여 말한다. 초기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려고 주말 근로와 하루 10~11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12년차인 지금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작업 속도와 과정을 고려하여 언제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맞추어 일을 한다고 한다. 로랑은 '자율성은 돈을 벌고 난 후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벌면 자율성이 생기게 된다고 말한다.

회사를 차려 다른 건축가를 고용하여 일을 하지 않고 왜 프리랜서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회사를 만들어 일할 때는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사회보장 비용 등)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건축가는 프리랜서로서 건축가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내며, 자유직업인 사회보장 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불만을 가지고 있다. 협회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 없이 회비만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로랑의 장래 꿈은 큰 프로젝트를 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부인의 나라인 한국에 와서 자신의 고국인 이태리 식품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건축가로서 은퇴 시점은 적절한 수준의 돈을 모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프랑스 프리랜서 건축가로서 일감 및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문제가 프리랜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프랑스 프리랜서 및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로랑이 프리랜서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그의 아들의 웃는 모습

■ 프랑스는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정의와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실제 생활과 노동시장에서는 프리랜서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통계적 용어도 아니다. 인터넷 개방형 백과사전인 프랑스판 위키피디아에서 프리랜서를 찾아보면 공식 용어인 독립노동자(travailleur indépendant)로 대치하여 설명하고 있다.²⁾ 한편 위키낱말사전 프랑스판은 프리랜서를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한 명의 고용주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히 예술 분야나 언론 분야 및 작가(저널리즘)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프리랜서의 정의에 대한 법적·통계적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랑스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는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활용 예를 참고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는 어떤 접근방법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내 프리랜서와 관련된 기존 법적·통계적 분류와 현지 출장을 통해 입수한 프리랜서 관련 단체 및 연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프리랜서의 범위를 설명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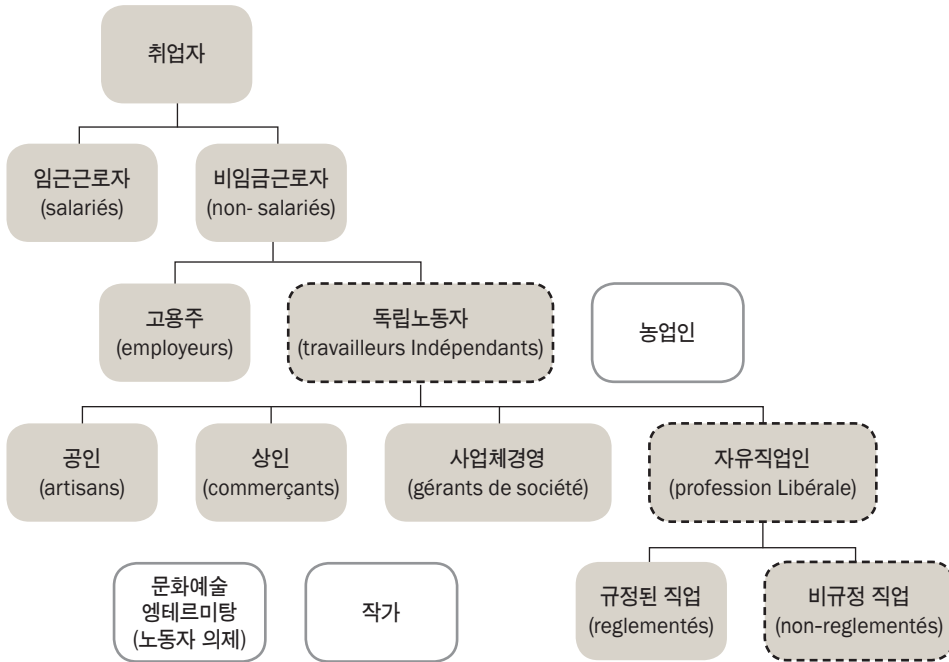
프랑스 통계청은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 비임금근로자를 다시 고용주와 독립노동자로 나누고 있다. 일단, 사회보장 관점에서 프랑스의 프리랜서 범위를 추출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는 프랑스의 독립노동자들을 프리랜서의 범위로 볼 수 있다. 고용관계에서 피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특정 고용주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독립노동자는 직종에 따라 다시 공인, 상인, (오너가 아닌) 경영자, 자유직업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 상인, 경영자, 자유직업인 등을 포함하는 독립노동자라는 범위는 프리랜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 오너가 아닌 경영자는 프리랜서 특성과 거리가 있으며, 공인,

2) https://fr.wikipedia.org/wiki/Travailleur_ind%C3%A9pendant

3) Quelqu'un qui vend ses services à un employeur sans contrat à long-terme, (En particulier) dans les métiers artistiques et journalistiques. <http://fr.wiktionary.org/wiki/freelance>

[그림 1] 프랑스 취업자 구분 및 프리랜서 범위(사회보장 관점)



주: 점선으로 표시한 3개의 네모는 각기 다른 프리랜서 범위를 가리킴.

상인 등은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 정의에 크게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수준의 프리랜서 범위는 자유직업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의 중간 네모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인은 의사, 변호사, 공증인,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유직업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시험·자격 등으로 진입이 제한적으로 규정된(réglementé) 직업과 그렇지 않은 비규정된(non-réglementé) 직업으로 나누어진다. 프랑스 통계청은 31개의 자유직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약사·변호사·건축사 등은 엄격하게 규정된 자유직업들이며, 경영자문·기술자문 등은 느슨하게 규정된 자유직업으로 표시하고 있다.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혹은 느슨하게 규정된 자유직업은 사회 변화에 따라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4)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nomenclatures/pcs2003/n3_31.htm

프리랜서 범위의 마지막 방법으로 프랑스에는 프리랜서를 자유직업인 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들로 한정지어서 규정하는 의견도 있다. 규정된 자유직업은 법률 등에 의해 주어지는 시험·학위 등을 거친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다. [그림 1]의 가장 아래 네모에 해당한다.

사회보장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간헐적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엔테르미탕(intermittants)’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노동자로 의제되어 보장을 받는다. 또한 작가는 그들만이 참여하는 특별 조직을 통해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프랑스 프리랜서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프랑스 프리랜서 사회보장은 크게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진다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1945년 시작되었다.⁵⁾ 1898년 산재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법이 제정되었고, 1913년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퇴직연금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1930년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시작은 1945년부터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당시 프랑스에 앞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던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하여 고안되었다.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였고, 노사가 공동관리하는 제도였다. 반면, 영국은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였다. 출범 당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연대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영국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실제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임금근로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된 것은 1948년이다. 비임금근로자들(자유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각 직종별로 다른 노령연금보장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각 직종별 체계들은 CNAVPL(Caisse nationale d' Assurance

5) 이 장은 프랑스 현지 출장 시 입수한 RSI와 CIPAV 내부 문건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노령연금 중앙기구)에 포함되었다. 1952년과 1961년 농민들을 위한 노령연금 및 의료보장 체계가 마련되었다.

프리랜서가 포함되는 독립노동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는 1969년에서야 운영되었다. 이후 변화를 겪어오던 독립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는 2006년 이전 운영기관들을 통합하여 만든 RSI(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독립노동자 사회보장 체계)이라는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실업보험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비임금근로자인 독립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독립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제도를 만들었다.

프랑스 소규모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제도⁶⁾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는 기존 사회보장 및 과세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간편화된 방법으로 사회보장 체계에 포함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독립노동자인 공인, 상인, 자유직업인 모두가 대상이 되며, 사업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요 활동이 상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액이 연 81,500유로, 서비스인 경우에는 32,600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를 차리는 것에 비해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보장 체계에 가입이 편리하다. 둘째, 등록이 의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회보장 체계에 가입하면 된다. 셋째,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한 번에 내면 된다.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빠진 실순매출액이다. 넷째,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고 환급받을 수 없다.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에서 적용하는 과세는 매출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규모 과세(régime micro-fiscal)와 더 낮은 소득기준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단순 소규모 과세(régime

6) <http://www.cci.fr/web/auto-entrepreneur/points-cles-de-l-autoentrepreneur> 참고.

micro-fiscal simplifié) 등이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상품 매출액의 14% 혹은 CIPAV(독립노동자 노령연금 담당기관)가 규정하는 자유직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21.3%, 기타 서비스소득 및 RSI가 규정하는 자유직업인들에 대해서는 24.6% 등의 요율이 적용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의 운영은 직종에 상관없이 RSI가 담당한다.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체계, 독립노동자 대상 체계, 농민 대상 체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운영 조직은 중앙정부(국가 수준, 지방정부(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수준), 자치단위(우리나라 읍면동에 해당)로 나누어진다.

보장 내용은 의료·산재·노령·가족 등으로 나누어지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CNAMTS(의료·산재), CNAV(노령) CNAF(가족), ACOSS(보험료 징수)로 운영조직이 구분된다.⁷⁾ 하지만 독립노동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RSI라는 조직이 노령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류의 보장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민의 경우에는 MSA라는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 독립노동자들의 노령연금은 공인과 상인은 RSI가, 자유직업인은 CNAVPL(Caisse Nationale d' 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노령연금중앙기구)이라는 통합 조직과 직종별 해당 조직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건축가의 경우에는 CIPAV(Caisse Interprofessionnelle de Prévoyance et d' Assurance, Vieillesse, 직종 간 노령연금기구)라는 조직이 노령연금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RSI에는 2,700천 명이 가입해 있으며, 가입자 중 36%는 공인, 41%는 상인, 23%는 자유직업인이다. 가입자의 3/4는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44세이다. 독립노동자인 가입자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연 2% 정도의 완만한 증가를 보였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6%의 증가를 보여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앞에서 설명한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한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auto-entrepreneur)가 만들어진 2009년 당해 연도에 13% 증가, 2010년 19.1% 증가, 2011년 7.4%가 증가하여 이 제도가 독립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가입을 크게 촉

7) 프랑스 실업보험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비임금근로자인 독립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RSI의 주요 재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가입자의 기여금이다. RSI는 질병·출산·산재일일보상·사망·장애·노령 등과 관련하여 기여금을 받는다. 두 번째는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일반사회기여금)와 CSRD(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부채상환기여금)이다. CSG는 사회보장 자원 확대를 위해 CSRD는 사회보장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기여금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는 제3자 청구분이며, 네 번째는 사업체들에게 부과되는 C3S(contribution sociale de solidarité sur les sociétés, 사회연대기여금)이다. C3S는 비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1970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협동조합들도 대상이 된다.

직종별 노령연금기구들의 통합체인 CNAVPL에는 2013년 현재 총 606,52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CIPAV(Caisse Interprofessionnelle de Prévoyance et Assurance Vieillesse)에는 217,175명이 가입되어 있다.⁸⁾ CIPAV 신규 가입은 평균적으로 매년 20,000명 정도이며, 말소는 15,000명 정도이다. 60세가 넘는 가입자 수는 31,000명인데, 그 중 3,600명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이다.

프랑스 자유직업인 노령·퇴직연금은 현재 납입자의 기여금으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을 충당하는 세대 간 연대를 기초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은 수급자(퇴직자)와 납입자 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CIPAV는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율을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 2012년 1구간 요율이 8.6%이었으나 2013년에는 9.75%로, 2014년에는 10.10%로 증가가 예상된다.

8) 프랑스 자유직업인 노령연금은 직종별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건축가 등을 가입자로 하는 CIPAV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프랑스 프리랜서 의료보장은 독립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독립노동자 대상 사회보장 체계인 RSI 가입은 공인·상인·회사경영자·자유직업인들에게는 의무적이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외의 사람들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가입자에 따라 의료보장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은 법적 배우자, 부양책임이 있는 아동, 직계존손과 직계비속, 3단계 내 인척과 방계 친족, 동거인, 시민연대협약(PACS)에 의한 동성애 부부, 가입자가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생존인 등 넓게 규정되어 있다.

보장 개시 시점은 독립노동자로 활동의 개시, RSI 가입 시점이며, 사고로 인한 산재일일보험금을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도 또 다른 개시 시점이 된다. 보장의 종료 시점은 사망, 이혼·활동의 종료 등이다. 하지만 보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및 보호 서비스와 금전적 지급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독립노동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세후 직업적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기준 시점은 연, 월, 분기 등 세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임금근로자에게는 13.5%(본인 부담 0.75%, 고용주 부담 12.80%)의 요율이 적용되는 반면, 독립노동자에게는 7.2%가 적용된다. 공인과 상인에게는 사망과 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가 요율이 적용된다.

독립노동자 활동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완화된 요율이 적용되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활동 첫해에는 프랑스 사회보장이 정한 최대치의 19%가, 둘째 해에는 29%가 적용된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활동 첫해 보험금 유예가 가능하며, 둘째 해에는 연기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도시감면지역(zone franche urbaine)을 두어 영세 독립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감면 대상은 프랑스 시간당 최저임금의 3,024배에 해당하는(2013년 현재, 28,686유로) 연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공인과 상인이다. 이러한 감면은 최초 5년간 이루어지며 2014년까지 임시로 적용된다.

기여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년 5월 1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 활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계산된다.

의료보장 서비스는 크게 의료비용 보상과 질병에 따른 손실소득 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의료

비용 보상은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책임 정도와 보상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입원, 이동비용, 온천치료, 국외치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손실소득 보상은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활동 중단이 있을 때 지급된다. 출산의 경우는 여성 가입자 혹은 남성의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되며, 본인 출산의 경우 최소 44일의 중단이 있어야 하며 최대 74일(단순 출산)까지 지급된다. 출산 시 아버지의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보상이 지급되며, 출산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속된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된다. 질병에 대한 소득보상은 가입자 중 공인과 상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보상의 개시 시점은 입원 4일째부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활동 중단 8일째부터 시작한다. 보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상 금액은 최대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난 3년간 소득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다.

■ 프랑스 프리랜서 노령연금은 직종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 프리랜서의 퇴직 및 은퇴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은 직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직종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연금 체계가 다르다. 건축가 등 200여 개가 넘는 직종의 자유 직업인들이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CIPAV의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로 의사들은 CARMF, 약사들은 CAVP, 공증인들은 CRN이라는 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CIPAV의 퇴직연금 체계는 기초와 보충연금과 장애·사망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로 소득을 예상하여 납부하고 2차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2년 전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다. <표 1>에서 알

<표 1> 기초퇴직연금 기여금과 점수

순소득(2011년)	기여금(2013년)	점수
1,944유로 미만	190유로(정액)	구간 1 : 69.94유로당 1점, 최대 450점 구간 2 : 1536.83유로당 1점, 추가 100점, 최대 550점
1,944~31,477유로(1구간)	소득의 9.75%	
31,477~185,160유로(2구간)	3,069유로(1구간)+남은 소득의 1.81%(2구간)	
소득 미상	3,069유로(1구간 최대)+2,782유로(2구간 한도)+5,851유로	

자료 : RSI 내부자료.

〈표 2〉 보충퇴직연금 기여금과 점수

순소득(2011년)	기여금(2013년)	점수(점)
~41,050유로	A 등급=1,184유로	36
41,051~48,990유로	B 등급=2,369유로	72
48,991~57,500유로	C 등급=3,553유로	108
57,501~66,000유로	D 등급=5,922유로	180
66,001~82,560유로	E 등급=8,291유로	252
82,561~102,560유로	F 등급=13,028유로	396
102,561~122,560유로	G 등급=14,213유로	432
122,561유로~	H 등급=15,397유로	468

자료 : RSI 내부자료.

수 있듯이, 기여한 보험료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은퇴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획득한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보충연금은 <표 2>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진 등급에 의해 정해진다.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바로 다음 위 단계로 이동은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직전 연도(2012년) 소득이 32,285유로 미만인 경우 보험료 감면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100, 75, 50, 25%의 감면이 있고 이에 따라 획득하는 점수도 줄어든다.

장애 및 사망연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에 대한 보험료가 다르다. 65세까지는 기여금 납부가 의무적이며 66세부터 80세까지는 65세 미만의 배우자 혹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혹은 성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시점에서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의 개시가 시작되며 만기까지 매월 지급된다. 연금 수령률은 개시시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0~62세부터 가능하며 최대연금수령 연령은 65~67세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기초연금의 경우 2012년 4월에 정한 획득한 1점당 0.5547유로이며, 보충연금의 경우 2013년 1월에 정한 1점당 2.60유로이다. 장애와 사망연금은 가입한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 프리랜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 및 대응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프랑스에서 프리랜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적·통계적 정의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독립노동자라는 독자적인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프리랜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도 조사·축적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노동자 기준을 활용하여 프리랜서들을 사회보장 체계 내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통계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의 특성상 새로운 직종의 출현 등으로 인해 범위가 가변적이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통계 취득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노동유연성 등으로 인해 프리랜서적 노동 방식이 점차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하거나 혹은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정의 및 범위, 기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프리랜서(독립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는 종사상 지위를 기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동시에, 직종별 노령연금이 각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프리랜서들에서 직종별 업무 성격, 보상 방법, 보상 수준들 간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보험 비용 기여와 보상 방법은 직종별로 나누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 직종 간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고소득 직종 프리랜서와 저소득 직종 프리랜서 간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오토-앙트레프러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독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운영을 단순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세금 체계와 사회보장 체계에 속하지 않는 독립노동자들을 체계 내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한 가입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매출을 올리는 1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들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장비용의 납부를 꺼려 하여 산재보험 등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보장 체계로 끌어들이는 유인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KLI**

참고문헌

- EFIP(2002), Les I-Pros Européen: Une Etude.
- CONSEIL DES PRELEVEMENTS OBLIGATOIRES(2008), L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des indépendants.
- INSEE(2012), Enquete Emploi.
- https://fr.wikipedia.org/wiki/Travailleur_ind%C3%A9pendant
- <http://fr.wiktionary.org/wiki/freelance>
-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cotisations-soc-effectives.htm>
-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f_id=11802&page=lettre/lettre45/e_lettre45_p1.htm